



# 군 산 시



수신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경유)

제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024(2024.10.4.),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6410(2024.10.7.)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펜타닐 패치 포함))를 분석하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하여 기준 준수를 요청하였으나('23.4월~5월), 이후 3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하여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행정조치 사항)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134명)에게 해당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동 금지 명령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관할 허가 관청에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을 의뢰할 예정이오니,
6.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1부.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부. 끝.

군 산 시



주무관

박숙진

의약계장

김희진

보건행정과장

전결 2024. 10. 8.

김현

협조자

시행 보건행정과-16740

(2024. 10. 8.)

접수

우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 [www.gunsan.go.kr](http://www.gunsan.go.kr)

전화번호 063-454-4935

팩스번호 063-463-1470

/ [sj160619@korea.kr](mailto:sj160619@korea.kr)

/ 비공개(5,6)